

-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이설사업 운영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-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추승우 의원 외 29명

나. 의안번호 : 제616호

다. 제출일자 : 2019. 4. 2

라. 회부일자 : 2019. 4. 3

2. 주 문

-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한국전력공사와 서울시간 사업대상지 승인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, 불필요한 예산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“가공배전선로 지중화이설사업 운영 기준”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관계 부처 및 기관에 강력히 건의함

3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공중에 설치되어 있는 배전선로를 도시미관개선, 재해대비 등의 사유로 지중설비로 변경하는 “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”을 지난 9년간 74개사업, 1,859억원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사업대상지 선정결과에 대한 사전통보 없이 추진하고 있음

- “가공배전선로 지중화시설사업 운영기준”에 따르면 지중화 사업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요청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신청접수부터 검토, 사업승인 및 통보가 자치구와 한국전력공사 간 접수 및 통보로 이루어져,
서울시는 그간 많은 예산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투자하면서도 시급지역에 대한 우선투자는 고사하고 어느 곳이 선정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알지 못하고 있어 예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
- 따라서, 사업 미승인으로 인해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않도록 사업대상지 선정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적극적 의사소통을 관계 부처 및 기관에게 강력히 건의함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전기사업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, 시행규칙

나. 기타사항: 없음

다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
- 서울시장(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) : 수정 동의
 - 해당 운영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는 “별도의견 없으나” 내용 중 투자사업 기간을 최근 투자한 사항으로, 또한 금년 사업지에 대하여는 최종자료로 기재 요청

5. 이 송 처

가. 국 회 : 산업통상자원위원회

나. 정 부 : 산업통상자원부

다. 기 관 : 한국전력공사

6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김동수)

가. 개요

- 동 건의안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사업대상지 선정과정에 배제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사업지 선정에 대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- 우리나라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「전기사업법¹⁾」 제72조의2에 따라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기사업자(한국전력공사)에게 이를 요구하여 지하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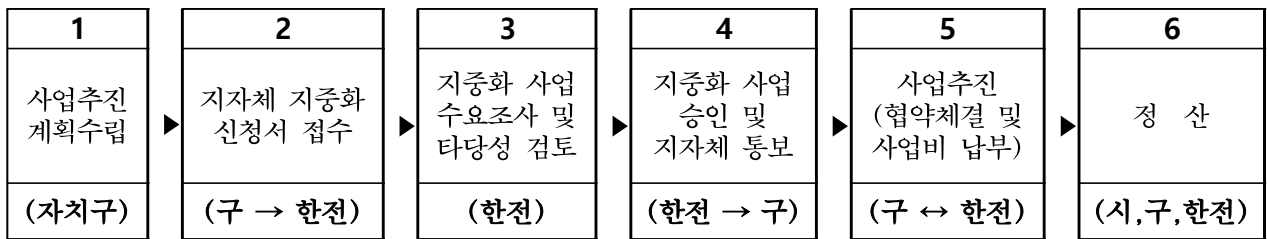
「가공배전선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」²⁾과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」³⁾에 의해 한국전력공사와 자치구, 서울시가 각각

-
- 1) 전기사업법 제72조의2(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(제20조에 따라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한다)의 지중이설(이하 "지중이설"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. 다만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.
③ (생략)
 - 2) 가공배전선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5 - 240호)
제13조(사업비 부담기준) 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중이설 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하는 총 소요 비용은 다음의 각항에 따라 부담한다.
1. 전기사업자가 승인한 지중화사업에 대해 전기사업자는 소요되는 사업비의 50%까지 지원 할 수 있다.
2. 공용설치통신사업자가 통신선로 지중화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전기사업자가 지자체와 협의한 지중화 사업비의 부담률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.
 - 3)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(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 등) 「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 제8조에 따라 적용되는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치구의 사업 및 시비보조율은 별표 1과 같다.

50 : 25 : 25 로 나누어 사업비를 분담하고 있음

- 서울시는 한국전력공사가 지중화 사업을 재개한 '09년부터 '17년까지 74개 사업(74km)에 걸쳐 1,859억원을 투자하였고⁴⁾ 올해에도 14개 지중화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약 199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음⁵⁾
- 하지만, 지중화 사업이 자치구청장의 사업요청으로 시작되고 한국 전력공사에서 사업검토 및 승인·통보 절차를 거치도록 관련 법령과 운영기준에 명시되어 있어 서울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사업 대상지 선정에 관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

※ 참고 :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절차



- 또한, 한국전력공사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시점과 서울시가 예산 편성하는 시점이 불일치하여 선정된 사업대상지를 알지 못해 서울시는

[별표1]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시비보조율(제2조 관련)

사 업 명	시비보조율	비 고
:	:	:
93. 가공배전선 등 지중화사업	50%	◦ 단, 도로복구비는 전액 구비
:	:	:

4) 2019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계획, 도시교통본부 보 행정 책과-12739(2018.11.19.)

구 분	'13년	'14년	'15년	'16년	'17년	비 고
투입예산(백만원)	3,250	3,242	4,040	10,023	10,382	
지중화율(%)	56.35	56.91	57.59	58.18	58.94	

5) 2019년 회계연도 예산서

(단위 : 천원)

예산명	2019	비 고
가공배전선 지중화	19,923,000	- 자치구 지중화사업(13개 사업) : 141억 23백만원 - 노후 주거지역 전봇대 지중화사업(홍제동 문화마을) : 58억원

자치구 후보지역 전체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고, 이 과정에서금년의 경우 서울시가 예산확보 한 대상 사업지 일부가 지중화 사업에 누락되어 114억원의 예산이 불용될 처지에 놓인 상황임⁶⁾

- 따라서, 불필요한 예산 불용을 막고 예산 분담 주체인 서울시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게 사업대상지 선정과정에 서울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 절차에 대한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동 건의안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
- 다만, 서울시가 대상지 선정에 관여 할 경우 지중화 사업 시급지역에 예산 편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선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

6) 보 행정 책과-514(2019.1.14.)